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2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한민수·김 현·김우영

허 영·정성호·김태선

박민규 · 정동영 · 박상혁

임광현 · 이기헌 · 황정아

서영교 · 박홍배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 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 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1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 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 한 관여 금지) ①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 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 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 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 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을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